



Monitoring Reports  
모니터링 리포트

Vol.24 \_ 2016년 5월

이사람의 향기 |

장애인 맞춤형 지원정책, 의회에서부터 류재구 (경기도의회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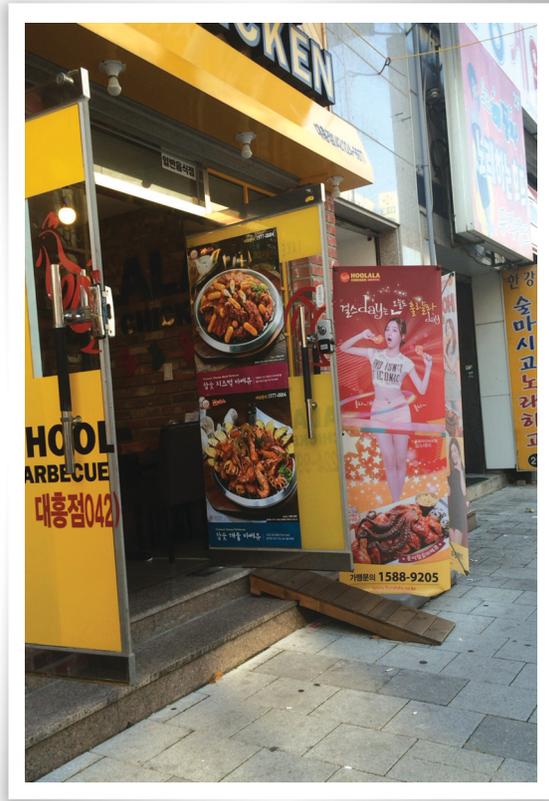
포커스 |

전국 장애인 인권 조례 현황

2015년 지하철 엘리베이터 관리실태 모니터링 결과보고

이슈포착 |

접근 가능한 여행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



장애인은 **앤트맨**이어야 한다.

---

현실에서도 앤트맨과 같은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악과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고 단순히 인간의 본능을 채우기 위해서인데, 그 주인공은 바로 장애인이다! 단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음식점 입구의 경사로에 맞춰 앤트맨처럼 작아지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니...

※ 앤트맨(영화)은 2015년 상영된 미국의 슈퍼히어로 영화이다.

---

# Monitoring Reports 모니터링 리포트

Vol.24 \_ 2016년 5월

## CONTENTS

- |             |  |
|-------------|--|
| 이미지 단상      | 장애인은 앤트맨이어야 한다.<br>- 함석배 (지방의회 의정모니터단장)    |
| 02 편집자 편지   | 이 무덥고 열받는 5월에                              |
| 04 의정돋보기    | 적극적 행정, 찾아가는 복지정책                          |
| 08 이 사람의 향기 | 장애인 맞춤형 지원정책, 의회에서부터<br>- 류재구 (경기도의회 의원)   |
| 16 포커스1     | 전국 장애인 인권 조례 현황                            |
| 25 포커스2     | 2015년 지하철 엘리베이터 관리실태 모니터링 결과보고             |
| 34 이슈포착     | 접근 가능한 여행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                    |
| 44 생활속 모니터링 | 격려 - 이동한 (지방의회 의정모니터단원)                    |
| 47 영화평      | 우생학에 날리는 사이다 일침, 미래 사회와 장애<br>- 류미례 (영화감독) |
| 53 센터는 지금   |  |

## 이 무덤고 열받는 5월에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젊은 여성이 줄지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 남성이 아무 이유 없이 저지른 범죄라고 합니다. 이 사건을 두고 ‘여성혐오 살인’ 이니 ‘묻지마 살인’ 이니 하더니,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정신분열증 환자의 소행이라며 말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과 보수언론들이 그렇게 합니다. 사회적 문제를 개인의 결함 탓으로 돌리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사회적 배경은 애써 외면한 채 한 개인의 정신병리적 일탈로 몰아가는 형국입니다.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이 일반에 비해 낮다는 경찰과 검찰의 연구 보고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정신병리는 모든 끔찍한 사건의 배후로 의심 받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5월의 폭염만큼이나 열불나는 일입니다.

이 무덤고 열받는 5월, 그래도 우리 센터는 차분하게 마음을 다잡고 모니터링 리포트를 발간합니다. 이번 호 ‘포커스’에는 장애인 인권 조례 현황과 서울시 지하철 승강기 관리 실태, 두 꼭지를 씁니다. 광역단체뿐 아니라 기초단체들까지 앞다투어 장애인 인권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마당에 조례들을 서로 비교하여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앞으로는 단점을 보완한 더 완전한 인권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서울시 지하철 승강기 모니터링은 우리 센터가 지난해 수행한 사업입니다. 장애 당사자 모니터 요원 12명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점을 하나하나 조사하였습니다. 서울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승강기만 조사했지만, 여기서 확인된 문제는 서울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닐 겁니다. 차후 다른 지역의 승강기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해외로 눈을 돌려 보았습니다. 2000년 이후 국제 장애인 사회의 관심사가 권리 쟁점에서 문화 쟁점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호 ‘이슈 포착’은 접근 가능한 여행을 위한 국제 수준의 노력을 다룹니다. UN과 UNWTO를 중심으로 국제 사회가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위한 중요한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최근 한국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감지됩니다. 2014년 5월 개정

된 관광진흥법에는 ‘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 ‘관광 취약 계층의 관광 복지 증진 시책 강구’, ‘여행 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12~2021)에 따라 전국 11곳을 장애물 없는 ‘열린 관광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늘릴 계획입니다.

지자체도 나섰습니다. 몇 해 전 제주도에서는 관광 약자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아직 반응이 없지만, 이 조례가 많은 지자체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봅니다. 그동안 개선된 법과 제도를 토대로 이제 여행 같은 개인의 욕구가 분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향기’는 특별히 주목됩니다. 류재구 경기도의원이 이번 호 주인공입니다. 지난 연말 <경기장애인인권포럼>은 류 의원이 ‘경기도장애인문화예술활동지원조례’ 제정을 주도하는 등 장애인을 위해 가장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였다며 우수의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국내외 장애인들이 문화 쟁점을 점점 더 중시하는 작금의 상황에 비추어볼 때 류 의원의 의정 활동은 모범적이고 미래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강남역 사건에 대해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사회심리적 장애인이 지닌 개인적 한계나 혼란함을 부정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사회적 배경과 맥락을 무시하고 오직 개인의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는 강남역 사건 보도는 큰 유감입니다. ‘여성혐오’든 ‘장애인 혐오’든,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은 사라져야 합니다. 불의의 사고로 꽃다운 운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이 사건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정신적 장애인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진솔하고 덜 편협한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6년 5월

양원태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대표

## 적극적 행정, 찾아가는 복지정책

글 김애영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선임연구원

2014년 장애인 통계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교육, 고용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장애인 차별 정도를 조사한 결과, '사회'의 장애인 차별에 대해서 '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6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한국에서 장애인으로 사는 것은, 또 장애인의 가족으로 사는 것은 사회 전반에 걸친 차별과 부딪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 필요정도가 높은 장애유형인 지적(발달) 장애인<sup>1)</sup>과 그 가족은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

현재 정부에서는 발달장애인가족지원정책의 일환으로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서비스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편성해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발췌된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이용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 2014년 사업대상 65명 중 20명만이 상담을 받았을 정도로 추진 실적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 이는 소득기준(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이하)으로 대상을 한정한 점, 경제적 요인, 많은 시간 투자, 정보부족, 사생활 노출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발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서비스 대상이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자녀의 부모에 한정되어 있는 점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서미정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은 해당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보제공과 방문상담서비스 등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기구를 만들어 정책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정비와 함께 정책 대상자들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계획 초기단계부터 정책집행을 염두에 두고 관계자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이 필요하다.

1) 2014 장애인통계, p.208 <표2-7-2> 장애인의 일상생활 도움 필요정도-장애유형별

2014년 09월 16일, 광주광역시의회 제232회 환경복지위원회의 제1차 발언 중

**서미정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 관련해서 집행 잔액이 4,460만원 남아있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를 대상으로 65명이 사업대상이었고 추진실적이 20명이에요. 어제 잠깐 듣기는 했지만, 여기 사업시행 기관이 광주에 2개라고 들었거든요.

**박향 복지건강국장**

언어학습센터하고 심리지원센터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미정 위원**

추진실적이 저도 어제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업대상을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현장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부모님들하고 자주 만나는 접촉의 기회가 있었는데 부모님들의 욕구는 굉장히 상담을 받고 싶어하고 누군가로부터 지지, 또 심리·정서적인 지원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상담을 통해서 하는 마음들이 대단히 많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실적들이 저조한 것인지, 홍보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서 어떤 방식으로 상담을 지원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박향 복지건강국장**

여기도 실제로 부모님들은 발달장애인 부모 같은 경우는 소아정신과 원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발달장애 아동 부모의 60~70%는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 분들이 때로는 임상치료까지 투약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현재 여기는 왜 1인당 단기 6개월 주 1회 이런 식으로 한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왜 기간을 이렇게 해 냈나 봤더니 원래 취지는 초창기 심리지원이 필요한 단계에서, 대개는 3개월 이상 받아야 한대요, 심리지원을. 그 다음에 거기에서 안 될 경우에는 약물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병원에 의뢰하기 위해서 6개월 정도 단기적으로 주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님들 중에 정신과에서 판단할 때 심리상담이 필요하겠다고 상담을 받도록 권하면 이게 한 번 받을 때 40~50분이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투자가 필요해요. 여기 대상자는 복지부에서도 소득기준으로 전국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로 정해 놓고 있어요. 실제로 경제활동에 종사해야 하는 이유 때문에 나의 심리치료를 위해서 한 시간씩 투자할만한 엄마들이 없대요. 못한대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부모들이, 실제로 수요는 있는데 많은 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겠는가 봐서 실제로 담당자들이 복지부에 건의도 했습니다. 소득기준을 높여주라, 오히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도 이것보다 높은 사람도 받고 싶어 하니까. 그런데 복지부가 완강하게 이 선은 유지하겠다. 그래서 안 바꾸어 주는 상태고요.

일선에서는 또 상담센터에서만 지원서비스를 하도록 허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을 오는, 병원도 터주면 이용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고 일선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고, 저희도 이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을 늘리는 방법으로, 이번에 저희가 발달장애인 실태조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실태조사 항목에 가족에 대한 조사항목이 들어 있거든요. 가족의 욕구 그 조사도 해보고 그것을 통해서 받지 못한 이유는 조사결과를 안 보더라도 그것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시간이 일단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부모가 쉽게 못하는, 그러더라도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 서미정 위원

광주시 홈페이지를 보면 서비스대상에 발달장애인 부모 6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적자폐성 장애인 모든 부모님들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생략)

광주시가 지적장애인이 5,582명이고 자폐장애인이 598명 정도 되거든요. 그

러면 연령대는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생략)

그런 부모님들이 여기에 포함된다면 일단 사업대상에서도 저는 적은 대상이라고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 65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20명만 추진실적으로 나왔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3월엔가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가 동반 자살한 사고가 있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발달장애 자녀의 장애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을 본인들이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자살을 기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본인들이 심리정서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 때문에도 미리 사전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2013년도에 하고 끝났다고 말씀하시고 올해는 바우처사업으로 진행하고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맞지요?

(생략)

그랬을 때도 보면 정보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청주의다 보면 본인들이 정보에서 굉장히 누락이 돼요. 정보를 알지 못하고 접근하지 못해서. 어제도 제가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이것을 개선해 나가면 어떻겠느냐, 찾아가는 서비스로 본인들이 부모들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서 방문서비스 하듯이 방문상담이나 이런 것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고 싶어하는 부모님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면 어찌되었든지 간에 중요한 정책들이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면 조금 더 그 분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서 사업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애인 맞춤형 지원정책, 의회에서부터

인터뷰 · 정리 **김애영**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선임연구원

### 류재구 경기도의의회 의원



민선 6기 경기도의의회에서 지난 임기 동안 총 3건의 장애인조례를 대표발의하는 등 장애인정책 관련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류재구 의원을 만나보았다.

Q 바쁘신 중에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간 저희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에서는 장애인과 관련된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해 왔습니다. 장애인 정책에 대한 지방 의원들의 관심은 그리 높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 17개 광역의회의 장애인정책을 모니터링한 결과, 의원님께서서는 경기도의회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그간 경기지역의 장애인 정책과 관련하여 발언하신 양이나 내용면에서 두드러져 보이는데, 이처럼 장애인 정책에 남다른 관심을 갖게 된 계기나 동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에 주력하는 사이 장애인은 사회적 관심과 정책 대상에서 소외되어 왔으며, 장애인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과 배제 등을 겪어 왔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은 자율적 인권의 주체로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하며, 정부와 각 기관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장벽을 제거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도의원으로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를 위한 제도 마련에 관심을 갖고 실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Q 지난 민선 6기 1차년의 임기 동안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시설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지원 조례’ 등 3건의 조례를 대표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주 등의 의무에 편의시설의 유지·관리사항을 규정하여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조치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실태조사 시 표본대상에 포함하고 전수조사 시 개선사항 등을 확인하여 편의시설이 적정 유지·관리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시설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장애인 직업재활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지사도 장애인 직업재활교육을 할 수 있고, 장애인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기도의 공공청사 시설 등을 무상으로 대관·대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지원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지원은 미흡한 실정인어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의 조례를 발의하게 된 데는 다양한 이유에서지만, 목적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과 관련된 현 상태에서 부족하거나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토대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 및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제도적 개선 및 보완 사항을 반영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Q** 특히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지원 조례'는 제정될 당시 전국 지자체에 4곳(현재 9곳)밖에 없을 정도로 희소했었는데요. 당시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나 중점을 둔 사항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장애인은 문화·예술활동에서도 소외받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적 차원에서 문화·예술 활동 기회의 제공과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 문화·예술을 알리고 활성화시키고자 발의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을 지원하고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며,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전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Q** 장애 관련 정책은 여전히 타 영역에 비해 사람들의 관심에서 소외되어 있을 때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장애인 문화 활동에 대한 부분은 더더욱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주목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시각을 인지하고 나서부터입니다.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문화예술의 참관 대상 즉, 수동적 존재로 규정하면서 장애인과 문화예술 활동의 관계에서 탈문화적으로 접근해왔습니다. 이에, 문화예술은 장애인이 능동적으로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수혜적 차원의 서비스 중 하나로 여겨져 왔습니다. 장애인에게 문화예술 활동이 주변화되고 수동적 태도로 인식되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장애문화예술인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로 발전시키게 되었습니다.

**Q** 타 분야의 조례도 마찬가지겠지만, 장애인 관련 조례의 경우 제정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의 참여와 의견수렴 절차가 있었으리라 짐작되는데요. 어떤 형태로 의견수렴을 거쳤는지 궁금합니다. 덧붙여 정기적으로 장애단체 관련자들과 토론회와 정보의 공유의 기회를 갖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역을 중심으로, 의회활동을 중심으로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 그리고 각종 장애인단체 및 관련 기관 종사자들과 의견을 나누곤 합니다. 당사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면담이나 공식적인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수렴하고 있습니다.

**Q** 장애인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장애인에 대하여 머리와 가슴으로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아무래도 장애인 당사자만큼 잘 알 수는 없겠지요. 장애인 당사자들과 그 가족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



고, 장애인들이 다방면에서 여러 가지로 경험하는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욕구를 조례에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례, 조례의 실효성 담보에 고민과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Q** 민선 6기 1차년의 경기도의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의원님께서 장애인 정책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질의를 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 생상품, 일자리(고용), 장애인 성폭력 교육·예방, 편의시설 점검, 직업재활시설, 보조기구 등이 그것입니다. 앞에 언급한 부분을 포함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까? (그 이유도 함께 말씀해주세요.)

장애인 고용정책에 관심이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직업을 통한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은 최고의 복지 구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재 장애인고용 촉진과 직업재활과 관련해 직업재활시설을 통한 고용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장애인 고용 지원 정책들이 실시되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 시장에서 장애인 차별 문제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의 고용실태와 경제활동상태는 양질의 측면에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어 장애인 고용정책이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5년 기준, 중증장애인 고용률은 22.7%에 불과한 반면 경증 장애인의 고용률은 43.6%로 단순 고용현황에서부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실제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정책이 경증장애인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 중증장애인 고용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책무와 지원책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현재의 의학적 손상중심의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중증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 강화와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노동능력에 기반한 고용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고민과 논의를 통해 정책화시키는데 노력할 생각입니다.

**Q** 류의원님이 하신 질의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각 사업의 예산집행정도나 실행률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정책과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탄탄한 예산이 뒷

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이 단순히 세워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 집행을 통해 장애인 복지 체감도 향상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에, 관련 예산과 집행 및 실행률에 대하여 점검과 독려 차원에서 질문을 하는 편입니다.

**Q** 평소 장애인 정책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 정책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얻는 편입니까?

매일 아침 4시에 기상을 해서 신문을 보는 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인터넷, 지면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기사를 접하고, 새로운 정보와 아이디어가 있을 때마다 스마트폰에 메모해 두곤 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장애인 정책에 대하여 꾸준히 수집하고 있으며, 국회입법동향에 대한 검색과 타 지자체와의 정책 비교, 학술논문 참고, 수시로 관련 토론회·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다각적으로 장애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Q**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추진해보고 싶은 장애인 정책이나 조례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우리나라는 2017년 장애등급제 폐지를 목표로 지난 6월부터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이 서울 구로구 등 전국 6개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개편 2차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자체 10곳을 선정하여 오는 6월부터 6개월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장애등급제 개편·폐지에 대비하여 꼼꼼한 검토를 통한 제도적 대응·보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장애인등급제 개편·폐지와 관련하여 보완적이고, 발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정책과 조례에 대한 고민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Q** 경기도의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도가 가지는 특성, 혹은 장단점, 지자체의 의지 등 여러 측면에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 장애인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안정을 보장하고 사회·경제생활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인권을 신장하며, 자립을 통한 사회통합 도모 등 장애인 관련 다양한 정책·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 한국장애인총연맹의 전국 17개 시·도 분야별 장애인복지·교육 수준 분석결과를 보면, 경기

도는 복지 분야 14개 지표에서 최하위인 '분발' 등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장애인 복지 관련 예산 확보 수준에 미흡함을 보였는데, 실제 최근 3개년 간 경기도 장애인 복지 예산은 '13년 316,883,947원, '14년 309,280,815원, '15년 372,937,060원으로 서울시 장애인복지 예산이 '13년 491,143,382원, '14년 547,959,427원, '15년 640,807,265원인 것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충분한 예산 확보는 안정적인 사업 수행과 서비스 총량 확대 등을 통한 장애인 복지수준 및 체감도 향상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더욱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예산의 현실화는 우선적으로 갖춰야 할 사항입니다.

### Q 경기도가 타 광역시도에 비해 앞서 나가는 장애인 정책과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를 꼽는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경기도는 국내 최초로 재활공학서비스의 제공과 연구·개발 수행을 목적으로 2004년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조기구가 필요한 경기도 거주 장애인 및 노인 등 신체적 어려움을 가진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보조기구 상담·평가·시험평가, 사례관리, 보조기구 교부·대여, 대상자 장애 상태 및 기능에 맞춘 개조·제작, 보조기구에 대한 정보 제공, 상시 및 순회 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조기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직업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의 참여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재활공학서비스를 마음껏 영위하고 있는 미국·일본·유럽 등 선진국의 장애인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은 자신에게 맞는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과 더불어 보조공학이 국가주도의 보편화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제안 및 정보제공, 홍보사업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는 타 지자체에 비해 앞서 나가는 장애인 정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장애인에 대한 재난관리 체계 구축을 향후 개선과제로 꼽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신체·인지적 기능 저하 등으로 재난대응에 취약한 재난약자입니다. 하지만, 장애인은 재난안전 취약계층 관련 정책에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장애유형별 맞춤형 재난관리 정책 개발과 장애 통합적 재난안전 지원체계 구축은 심도 있게 고민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또한, 장애인 회관 건립을 들 수 있습니다. 현재는 장애인 관련 단체들이 각기 흩어져서 고유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무실 운영 및 이용 등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들을 회관으로 결집시켜 각 시·군 지부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장애인 복지를 펼쳐나간다면 서비스 접근성과 정보의 제공이 용이해지는 등 장애인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서울에는 '이룸센터'라는 장애인 회관이 있고, 경기도 내에도 안산, 안양, 과천, 수원시 등에서 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회관의 기능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광역 지자체로서 장애유형별 욕구를 대변하고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장애인회관 건립을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Q** 그간 의원으로 일하면서, 기억나는 사례나 인상 깊은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나는 사례를 돌이켜 보니, 정말 장애인 관련 제도 마련을 위해 열심히 일해 왔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현재 9대 뿐만 아니라, 8대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었고 최근에는 '경기도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원연구단체 「복지포럼」의 연구회장을 맡아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연구',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를 진행하는 등 장애인과 관련하여 다각도에서 정책적·제도적 접근과 발굴을 시도하고 집행 및 실천을 위해 노력해 왔던 순간순간들이 가슴속에 깊이 남아있습니다.

**Q** 마지막 질문입니다. 민선 6기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어느덧 2년 가까이 되었는데요. 남은 임기동안 꼭 이루고 싶은 목표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향후, 장애인복지 정책·사업의 수립·시행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은 등급에 의한 일률적 서비스 제공이 아닌, 개별적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일 것입니다. 현재, 대다수의 선진국들은 사회적 관점에서 장애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17년 장애인 등급제 개편·폐지를 목표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남은 임기 동안 장애인에 대한 법제 및 정책 형성 과정에서 제도적·관행적 차별을 철폐함은 물론, 장애인 등급제 개편·폐지에 대비한 제도적 보완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의 욕구를 반영하고, 전 생애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공고히 하는 데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전국 장애인 인권 조례 현황

글 윤삼호 협동조합 장애인지식정보공동체

### 1. 장애 관련 조례 현황

2014년 12월 현재 전국 244곳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1,685건의 장애인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다. 이 수치는 5년 전에 2010년 848건과 비교할 때 거의 2배가 증가한 것이다. 이는 최근 5년 간 장애 관련 쟁점이 크게 부상하였으며, 각급 지방자치단체들은 이에 적극 대응하여 조례 제정에 힘을 쏟았다는 반증이다.

2014년 현재 지방자치단체별 평균 조례 수를 보면, 기초 자치단체가 없는 제주도와 세종시를 제외하면 경기도와 광주시가 각각 12.7건, 12.5건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이어서 전북(7.3건), 충북(7.1건), 경남(6.7건), 대전(6.7건), 서울(6.6건), 전남(6.5건), 충남(6.2건) 순이다.

〈표1〉 전국 장애인 관련 조례 현황(2014년 12월 기준)

구 분	광역시/기초 지자체수 (개소)	조례수(건)					14년 기준 평균 조례 수(건)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서울	26	84	98	122	176	172	6.6
부산	17	23	26	49	64	60	3.5
대구	9	27	31	34	40	46	5.1
인천	11	34	42	50	53	59	5.4
광주	6	35	46	60	64	75	12.5
대전	6	14	20	28	34	40	6.7
울산	6	8	12	19	32	35	5.8
경기	32	235	278	330	380	407	12.7
강원	19	57	60	77	88	104	5.5
충북	13	43	51	78	92	92	7.1
충남	16	56	63	69	79	99	6.2
전북	15	44	49	64	80	109	7.3
전남	23	67	90	116	139	149	6.5
경북	24	35	44	57	69	79	3.3
경남	19	75	85	119	131	128	6.7
제주	1	11	12	14	16	18	-
세종	1	-	-	-	13	13	-
계	244	848	1,007	1,286	1,550	1,685	6.9

## 2. 인권 조례 현황

안전행정부가 운영하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에 접속하여 “인권”, “장애인 차별”, “권리 증진” 세 가지 키워드로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검색하였다.

그 결과, 〈표2〉에서 보는 것처럼 2015년 10월 현재 17곳 광역 자치단체에서 제정된 인권 관련 조례는 모두 86건이다. 광주가 7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전북이 각 6건이다. 반면, 충북은 3건으로 가장 적고 경북을 비롯하여 인천, 세종, 충

남은 4건이다. 조례의 대상과 범위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일반’, ‘아동·청소년’ 인권 조례는 17곳 모든 자치단체에서 제정되었고, ‘장애인’ 인권 조례는 경북, 울산, 충북, 경남 4곳을 제외하고 모두 제정되었다. ‘노인’ 인권 조례는 충북, 충남, 제주를 제외하고, 그리고 ‘여성’ 인권 조례는 충남을 제외하고 모두 제정되었다. 한편, ‘외국인’ 인권 조례는 경기와 제주에서만 제정되었다.

〈표2〉 전국 시도 인권 조례 제정 현황 (2015년 11월 기준)

구 분	일반	장애인	아동 청소년	노인	외국인	여성	계 (건)
서울	●●	●	●	×	×	●●	6
부산	●	●	●○	●	×	●○	6
대구	●	●	○	●	×	●○	5
인천	●	●	○	●	×	○	4
광주	●	●	●●○	●	×	●○	7
대전	●	●	○	●	×	●○	5
울산	●	×	○	●●	×	●○	5
세종	●	●	○	●	×	○	4
경기	●	●	○	●	●	●○	6
강원	●	●	○	●	×	●○	6
충북	●	×	○	×	×	●○	3
충남	●●	●	●	×	×	×	4
전북	●	●	●○	●	×	●○	6
전남	●	●	○	●	×	●○	5
경북	●	×	○	●	×	●○	4
경남	●	×	●	●	×	●●	5
제주	●	●	●	×	●	●	5
계							86

참고 : ‘아동·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처럼 아동과 여성의 인권을 묶어서 보호하는 조례가 있는 자치단체의 경우 ○로 표기하고 0.5건으로 계산하였음.

### 3. 장애인 인권 조례 현황

전국 자치단체 장애인 인권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표3〉과 같다. 아래 표에서 보듯

이 전국 244곳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37.7%인 92곳에 장애인 인권 조례가 제정되었다. 광역 자치단체 17곳 중에는 울산, 충북, 경북, 경남을 제외하고 13곳에서 장애인 인권 조례가 제정되었다.

제주와 세종을 제외하고 조례 제정률이 높은 지자체는 광주(100.0%), 대전(83.3%), 경기(71.9%), 서울(69.2%), 울산(66.7%) 순이다. 특히, 광주는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 6곳 모두에 조례가 제정되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인권 조례 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다. (대전의 경우 유성구를 제외하고 모든 자치단체에 장애인 인권 조례가 제정되었다.) 특이한 점을 꼽자면 울산, 충북, 경남의 경우 광역 자치단체에는 장애인 인권 조례가 없음에도 일부 기초단체에는 조례가 제정되었다. 특히, 울산의 경우 광역단체에는 장애인 인권 조례가 없지만 기초단체에는 동구를 제외하고 모든 구, 군에 조례가 제정되었다.

장애인 인권 조례 제정 현황이 전국에서 가장 심한 곳은 경북이다. 경북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어느 곳에도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

〈표3〉 전국 자치단체 장애인 인권 조례 제정 현황

(단위 : 개소, %)

구 분	광역, 기초 단체수	조례 제정 단체수	조례 제정률	비 고
서울	26	18	69.2	
부산	17	3	17.7	
대구	9	3	33.3	
인천	11	5	45.5	
광주	6	6	100.0	모든 광역 및 기초단체에 조례 있음.
대전	6	5	83.3	유성구에만 조례가 없음.
울산	6	4	66.7	광역 조례 없음.
경기	32	23	71.9	
강원	19	2	10.5	
충북	13	3	23.1	광역 조례 없음.
충남	16	7	43.8	
전북	15	4	26.7	
전남	23	6	26.1	
경북	24	0	0.0	모든 광역 및 기초단체에 조례 없음.
경남	19	1	5.3	광역 조례 없음.
제주	1	1	100.0	기초단체 없음.
세종	1	1	100.0	기초단체 없음.
계	244	92	37.7	

주: 2015년 11월 기준

#### 4. 장애인 인권 조례 내용 비교

광역 자치단체의 장애인 인권 조례의 내용을 '기본 계획', '인권센터', '인권 홍보', '인권 교육', '정책 개발', '실태 조사', '인권증진위원회', '신고 보상, 포상, 표창', '예산 지원' 등 9개 영역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는 조항은 지속 조항으로서 모든 자치단체에 공동으로 포함되어 있다.

장애인 인권 조례의 실효성을 가늠한다고 볼 수 있는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조항이 있는 곳은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충남, 전북, 전남 등 9곳이다. 이 가운데 경기, 전북, 전남 조례는 "장애인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재량 규정이 아니라 기속 규정으로서 단체장에게 인권센터를 설치할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이다. 반면,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충남 조례의 인권센터 설치 조항은 임의 규정(재량 규정)이다. 대구, 강원, 제주, 세종은 장애인 인권 조례를 제정했지만 인권 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이 없다.

장애인 인권센터의 운영은 모든 지역에서 민간단체의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서울특별시에는 장애인 인권 및 차별 금지의 기능을 하는 전문 단체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탁 시 제한 사항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아무런 제한 조치가 없었지만, 대전을 시작으로 부산, 충남이 위탁 제한 사항을 두고 있다.

〈표4〉 장애인 인권 조례 중 장애인 인권센터 관련 사항

구분	지역	센터 설치	접근·조사권	운영 방식	위탁 시 제한 사항
1	전남	의무 설치	×	민간단체 위탁 가능	×
2	서울	임의 설치	임의	민간전문단체 위탁 가능	×
3	광주	임의 설치	×	민간단체 위탁 가능	×
4	대구	×	×	×	×
5	제주	×	×	×	×
6	대전	임의 설치	×	민간단체 위탁 가능	- 장애인 복지시설 및 운영 법인이나 단체는 위탁에서 제외. - 2년 이상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 활동을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구분	지역	센터 설치	접근·조사권	운영 방식	위탁 시 제한 사항
7	강원	×	×	×	×
8	인천	임의 설치	×	민간단체 위탁 가능	×
9	경기	의무 설치	×	민간단체 위탁 가능	×
10	부산	임의 설치	△	민간단체 위탁 가능	(6과 동일)
11	세종	×	×	×	×
12	충남	임의 설치	△		(6과 동일)
13	전북	의무 설치	×	민간단체 위탁 가능	×

해당 자치단체의 소속 기관, 장애인 단체 및 복지시설 종사자, 사업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 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를 규정한 ‘인권 홍보’ 조항은 기속 조항으로서 모든 자치단체에 공동으로 포함되어 있다.

‘인권 교육’ 조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소속 기관, 장애인 단체 및 복지시설 종사자, 사업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 금지와 인권 보장에 관한 교육을 규정한다. 이 조항의 경우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경기, 충남, 전남, 제주, 세종의 조례는 기속 규정이지만, 인천, 광주, 강원, 전북의 조례는 임의 규정이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정책 개발’ 조항이 포함된 조례는 대구, 인천, 광주, 경기, 전북, 전남, 제주 조례이며, 모두 기속 규정으로 되어 있다.

장애인의 차별 사례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장애인 차별 금지를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실태 조사’ 조항은 대부분 자치단체의 조례에 포함되어 있다. 다만, 서울 조례에만 이 규정이 없고 세종 조례의 경우 관련 규정은 있지만 임의 규정이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인권증진 위원회’ 또는 ‘인권보장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모든 조례에 포함되어 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다른 자치단체는 이 조항을 모두 기속 규정으로 두었는데 서울 조례만 예외적으로 임의 규정이다.

‘신고 보상, 포상, 표창’에 관한 조항은 자치단체 별로 그 내용이 상이하다. 서울의 경우 “제보를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 침해 또는 차별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기여한 경우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부산과 광주

조례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충남은 그런 사람들에게 ‘표창’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장애인 인권 조례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이 명시적 조항으로 포함된 조례는 광주, 대전, 제주, 세종 등 4건이다. 이 중 제주 조례만이 예산 지원이 기속 규정이고 나머지는 모두 임의 규정이다.

끝으로, 장애인의 차별 금지와 인권을 규정한 조례의 명칭을 보면 서울만 ‘장애인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이고 나머지는 모두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로 통일되어 있다. ‘인권 증진’ 대신 ‘인권 보장’으로 된 조례도 일부 있다. 이상의 내용을 <표5>에 정리하였다.

<표5> 전국 광역 자치단체 장애인 인권 조례 비교

주요 내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	세종
기본 계획	●	●	●	●	●	●	●	●	●	●	●	●	●
인권센터	○	○	×	○	○	○	●	×	○	●	●	×	×
위원회			○	○				○				○	○
인권 홍보	●	●	●	●	●	●	●	●	●	●	●	●	●
인권 교육	●	●	●	○	○	●	●	○	●	○	●	●	●
정책 개발	×	×	●	●	●	×	●	×	×	●	●	●	×
실태 조사	×	●	●	●	●	●	●	●	●	●	●	●	○
인권 증진 위원회	○	●	●	●	●	●	●	●	●	●	●	●	●
신고,보상,포상,표창	●	○	×	×	○	×	×	×	○	×	×	×	×
예산 지원	×	×	×	×	○	○	×	×	×	×	×	●	○

참고 : ●는 “기속 규정”, ○는 “임의 규정”, 그리고 ×는 “아무 규정 없음”을 나타냄.

## 5. 장애인 인권 조례에서의 장애인 인권센터 업무

위의 표에서와 같이 장애인 인권 관련 기본 계획 수립, 홍보, 교육, 실태 조사, 정책 개발은 대다수의 자치단체에서 수행해야 할 내용이다. 특히 장애인 인권 조례에서의 '장애인 인권센터의 업무'를 살펴보면, 주로 상담, 인식 개선·교육, 프로그램·서비스 개발과 연구, 그 밖에 장애인 인권 보호와 관련된 업무는 장애인 인권 조례가 있는 모든 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실태 조사와 인권 증진 홍보에 관한 업무와 관련된 언급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서울 조례 시행규칙에서는 상담뿐 아니라 사례관리를 포함함으로써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 구제를 예정하고 있으며, 대전 조례는 최근에 제정된 조례이기에 권리 옹호와 법률 구조에 대한 내용이 업무로 언급되어 있다. 부산 조례는 분리와 임시 보호의 근거를 마련한 점이 특기할 만하다.

〈표6〉 장애인 인권 조례에서의 장애인 인권센터 업무

장애인 인권센터 업무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계
상담	●	●	●	●	●	●	●	●	●	9
사례관리	●	●					●			3
관련 자료 수집		●					●			2
권리 구제	●	●					●			3
실태 조사	●				●	●		●	●	5
차별 및 인권 침해 관련 조사	●	●					●			3
모니터링(지도/감독)		●				●	●			3
법률 구조 활동 지원		●			●		●			3
인식 개선, 인권 증진 교육	●	●	●	●	●	●	●	●	●	9
프로그램·서비스 개발, 연구	●	●	●	●	●	●	●	●	●	9
정책 연구·평가			●	●						2
인권 증진 홍보		●	●	●	●		●			5
인권 보장 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자문·지원			●	●						2
제공 기관 간·임시 보호 위한 서비스 연계 지원		●	●	●			●			4
기타 장애인 인권 보호 관련 업무 / 도시사가 필요로 하는 업무	●	●	●	●	●	●	●	●	●	9

---

## 6. 소결

장애인 인권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때 장애인 인권센터 설립 근거를 경기, 전북, 전남의 사례처럼 '임의 규정'이 아닌 '기속 규정'으로 두어야 한다. 장애인 인권센터는 장애인 인권 조례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핵심 기구이다. 장애인 인권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센터를 설립하지 않으면 사실상 이 조례는 인권 선언문에 가까워진다.

그리고 장애인 인권 조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가 조례에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 광주, 대전, 제주, 세종의 장애인 인권 조례에는 예산 지원 규정이 들어 있다. 이 중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기속 규정을 둔 조례는 제주가 유일하다.

나머지 조항들, 이를테면 인권 기본 계획 수립, 실태 조사, 인권 교육 및 홍보, 정책 개발, 인권(증진)위원회 설치 같은 조항들은 대부분의 시도 조례들이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 2015년 지하철 엘리베이터 관리실태 모니터링 결과보고

글 유진아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원

장애인에게 있어서 이동권은 공간이동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과거 일정한 범위 내에 국한되었던 장애인의 활동반경은 자립생활 운동과 함께 더욱 확대되었다. 이동은 교육, 직업 등의 사회 생활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동권을 확보하는 것은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누리기 위한 수단을 제공받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자가용(32.8%), 일반버스(29.4%)에 이어 지하철(13.1%) 순이다. 일반버스와 지하철은 이용률이 높은 편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실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주된 이유로 지하철 엘리베이터의 편의시설 부족(17.2%)를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 및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서는 대중교통의 편의시설 설치는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나 지하철의 경우 지하철 역사로의 진입, 역사 내 이동 등을 위해 엘리베이터의 설치·운영이 지하철 이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다.

이에 본 모니터링에서는 지하철 내 편의시설 중에서도 엘리베이터에 초점을 두어, 역사

진입 및 환승 등 역사 내에서의 자유로운 이동, 엘리베이터 규격 등 설치기준의 준수, 엘리베이터 고장시 대응방안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모니터링을 통해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현황 및 실태를 점검하여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사항들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특히 관련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1. 지하철 엘리베이터 관리실태 모니터링 대상

지하철 엘리베이터 관리실태 모니터링은 2015년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었다. 모니터링 대상은 서울지역 내 소재한 1~8호선 지하철 74개역으로(호선별로는 총 119개역) 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소재 1~8호선 환승역을 기준으로 하였다. 둘째, 2014년도 '역사별 승객 상하차 순위자료' 상에서 상위 랭크된 4개역(환승역 제외)을 포함시켰다. 구체적인 대상은 <표1>과 같다.

<표1> 현장 모니터링 조사대상 호선 및 엘리베이터 수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합계
대상역 수	17개역	21개역	14개역	14개역	18개역	15개역	13개역	7개역	119개역
엘리베이터수	56대	50대	31대	33대	36대	44대	36대	23대	309대

위 대상 역에 대해 12명의 장애인 당사자 모니터단의 현장실사로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으며, 모니터링은 크게 고장현황부분과 호선별 설치기준 준수 현황으로 진행되었다.

## 2. 호선별 엘리베이터 고장 및 대응현황

2012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1~8호선의 고장현황자료를 분석하였다. 우선 호선별로 살펴보면 1호선 112건, 2호선 288건, 3호선 141건, 5호선 298건, 6호선 128건, 7호선 196건, 8호선 59건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아래 <표2>와 같으며 호선별 엘리베이터 고장유형 현황은 <표3>과 같다.

〈표2〉 호선별 고장발생 연도별 현황

(단위 : 건)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전체
2012년	70	130	55	58	93	36	53	12	507
2013년	9	54	39	23	100	46	67	15	353
2014년	20	68	28	30	73	31	44	22	316
2015년	13	36	19	25	32	15	32	10	182
합계	112	288	141	136	298	128	196	59	1,358

〈표3〉 호선별 엘리베이터 고장유형 현황

(단위 : 건, %)

	파손	엘리베이터 불능/작동정지	부품 /자재불량	부품 /자재노후	장애인 관련	기타	합계
1호선	6	4	54	9	2	37	112
2호선	16	5	148	23	0	96	288
3호선	7	2	70	5	2	55	141
4호선	8	4	62	6	0	56	136
5호선	2	63	26	62	2	143	298
6호선	0	26	13	27	0	62	128
7호선	2	49	13	39	1	92	196
8호선	0	14	6	13	1	25	59
합계	41	167	392	184	8	566	1,358

다음으로 고장이 발생하여 신고가 된 시점부터 수리완료가 되는 비운행시간은 아래 〈표4〉와 같다. 2012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1,358건의 비운행시간이 발생하였다. 평균 42.44시간이었으며, 최소 0시간에서 최대 2,080.88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4〉 비운행시간 현황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358건	42.44시간	124.34	.00시간	2080.88시간

비운행시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시간 이상~5시간 미만이 536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30시간 이상이 359건이었다. 비운행시간에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전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엘리베이터를 통해서만 지하철 역사 내부로 진입할 수 있는 교통약자는 비운행시간동안 접근이 힘들다. 더욱이 휠체어 리프트 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은 역사의 경우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진다. 비운행시간이 3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하루 이상 엘리베이터가 비운행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는 지속적인 엘리베이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최대 30시간 이상 비운행되는 엘리베이터 고장 발생 관련 대응 현황은 아래 <표5>과 같다. 엘리베이터 고장 시 안내문 혹은 안내판을 부착하는 경우가 109건, 엘리베이터 고장시 수리완료 예정시간을 부착하는 경우가 88건, 엘리베이터 고장 안내문에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우회로를 기재하는 경우가 84건, 역무실에 엘리베이터 고장 대응매뉴얼을 배치하는 경우가 104건, 엘리베이터 고장 시 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가 6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5> 고장 관련 대응 현황

(단위 : 건)

내용	빈도	
	해당	미해당
엘리베이터 고장 시 안내문 혹은 안내판 부착	109	3
엘리베이터 고장 시 수리완료 예정시간 부착	88	24
엘리베이터 고장 안내문에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우회로 기재	84	28
역무실에 엘리베이터 고장 대응 매뉴얼 비치	104	8
엘리베이터 고장 시 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67	45
기타	6	-

다음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제15조(교통이용정보 등의 종류) 제2항<sup>1)</sup>에 근거하여 교통약자에게 이동편의시설의 위치 정보 및 최적경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제공받은 ‘엘리베이터 문제 대응 관련 매뉴얼’ 과 실제 현장에서 모니터단원을 통해서 수집한 매뉴얼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1) 교통약자에게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등 이동편의시설의 위치에 관한 정보,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하여 갈 수 있는 최적경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엘리베이터 문제대응 관련 매뉴얼’은 1~8호선 모두 동일한 구성 및 내용은 아니며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각각 별도의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었다. 각각의 매뉴얼은 하청 및 운영업체별로 관리하고 있는 역사에 배포하고 활용토록 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매뉴얼 내용을 살펴보면 간략한 상황대응과정만이 기술되어있을 뿐 특정 사고 및 교통약자에 대한 대응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두 매뉴얼 모두 다양한 문제 상황 제시와 이에 따른 대응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나 주목할 점은 대응매뉴얼에 장애인과 관련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위급 상황시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 장애유형별로 대응책이 달라야 함은 물론이고, 그 대응책이 사전에 마련되어 지하철 역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상시 교육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응매뉴얼에서 이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이는 실제 사고발생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보인다. 일반적인 대응책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이면서도 실질적인 것으로 마련하는 동시에 장애유형별 대응책을 특화하여 마련함으로써 어떠한 경우라도 신속하게 대응토록 개선해야 한다.

### 3. 호선별 엘리베이터 설치기준 및 규격 준수 현황

현장 모니터링에서의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엘리베이터의 설치기준 현황 및 엘리베이터의 접근성 부분이다. 엘리베이터의 설치기준 및 규격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 및 설치기준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을 근거로 하여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현장 모니터링에서는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절하게 준수하고 있는지 검토하였으며, 구체적인 건은 역사 수 대비 엘리베이터 개수, 엘리베이터 규격 및 유효바닥면적 미준수 등을 꼽을 수 있다.

우선, 엘리베이터 전면 유효공간은 규정상 가로 150cm x 세로 150cm로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전면 유효공간을 기준보다 넓게 확보하는 것은 무방하나,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면 휠체어 등이 이동하기에 매우 불편하므로 적절한 유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모니터링 결과, 전면 유효공간의 가로 길이는 평균 102.77cm로 나타났으며, 최소 69cm, 최대 400cm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로 길이는 평균 312.65cm, 최소 72cm, 최대 3,000cm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면 유효공간의 가로 길이 평균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로의 경우에는 기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소값과 최대값을 보았을 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으므로 전면 유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엘리베이터의 내외부의 단차 및 출입문 통과 유효폭을 살펴보았다. 총 627건

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단차가 있는 경우는 7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차의 평균길이는 1.17cm로 설치 기준 규격인 0.2cm을 초과한다. 설치 기준 규격도 준수하지 않는 경우는 7건 중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휠체어 등과 같이 큰 물체의 엘리베이터 내외부로의 출입이 용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통과유효폭을 확보해야 한다. 법령상으로는 80cm로 정하고 있으며 현장 모니터링 결과, 평균 88.49cm로 설치기준 규격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위를 살펴보면 최소 40cm에서 최대 125cm로 분포하고 있었다. 이들 중 해당 설치 기준 규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는 총 625건 중에서 26건으로 많은 수가 나타났다. 여기에는 엘리베이터 한 대당 위층과 아래층에서 측정한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다음으로 엘리베이터 음성안내사항 현황은 다음과 같다. 시각장애인은 시각적인 정보 대신 청각적인 정보를 전달받아야 주위 상황을 인지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국토교통부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지침(2013)」에서는 승강기 전면 및 내부에 승강기의 진행방향, 도착층, 출입문의 개폐상황 등을 알 수 있도록 음성안내장치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엘리베이터에서 출입문 열림, 출입문 닫힘, 엘리베이터의 진행방향(올라감/내려감), 현재층, 기타 등에 대해서 음성안내를 제공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출입문 열림을 안내하는 경우는 176건, 출입문 닫힘을 안내하는 경우는 308건, 엘리베이터의 진행방향(올라감)을 안내하는 경우는 367건, 엘리베이터의 진행방향(내려감)을 안내하는 경우에는 359건, 현재층을 안내하는 경우는 398건, 기타는 9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다. 출입문 닫힘에 대해서는 음성안내를 제공하더라도 출입문 열림에 대해서는 음성안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지, 엘리베이터의 진행방향 중 올라감에 대해서는 음성안내를 제공하면서 내려감에 대해서는 음성안내를 제공하지 않고 있거나 혹은 그 반대의 경우도 다수 발견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엘리베이터의 접근성 부분을 살펴보았다. 장애인에게는 엘리베이터의 설치 기준 및 규격 준수뿐 아니라 엘리베이터에 대한 접근성 또한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하철 역사 출입구 수 대비 외부 엘리베이터 설치현황과 엘리베이터 픽토그램 등 정보제공현황을 살펴보았다. 모니터링 대상 지하철 역사에 설치되어 있는 출입구 수는 총 74개역, 58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과 지하를 연결하는 외부 엘리베이터의 수는 115대였으며, 지하철 출입구 수 대비 외부 엘리베이터 설치율을 계산한 결과, 19.72%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장애인의 경우에는 넓게 분포된 지하철 출입구를 통해 비교적 단거리 이동으로 지하철 역사 내부로 진입이 가능하나 장애인, 특히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위치까지 장거리를 이동하여 지하철 역사 내부로 진입해야 하는 것

이다. 이는 장애인의 진입경로가 비장애인보다 매우 제한되어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4. 모니터링을 마치며

이번 모니터링에서는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엘리베이터가 현행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되어 있는지, 장애인이 엘리베이터에 접근가능한지, 상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엘리베이터가 모든 지하철 역사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교통약자의 이동에 제약이 있다. 2015년 11월 5일 기준으로 1호선 창동역, 3호선, 5호선 종로3가역, 4호선 명동 등에서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환승역의 경우 타 호선에서 운행하고 있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거나, 휠체어 리프트를 통해 이용할 수도 있으나 휠체어 리프트는 이용에 있어서 위험성과 불편함을 내재하고 있다. 또한 타 호선에서 운행하고 있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동 동선이 길어지는 불편함을 초래한다.

둘째, 설치된 편의시설조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엘리베이터의 규격 및 규모, 기타 편의시설 등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다.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최소한의 기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은 채, 점자패널의 파손·경사각 각도의 미준수·외부손잡이 파손 등의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휠체어 이용자들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관리 및 규격의 준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개선될 수 없을 것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등에는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적절히 설치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제재하는 규정<sup>2)</sup>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법령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유지·관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지하철 운영기업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엘리베이터 설치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는 물론이고, 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와 해당 지자체에서는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sup>3)</sup>.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21조(시정명령)에서는 “교통행정기관이 법 제29조에 따라 교통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정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음 각 호란 “1.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1년 이내”와, “2. 설치한 이동편의시설을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한 경우 : 6개월 이내”이다.

셋째, 장애인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원서비스도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엘리베이터의 위치, 경로, 고장 시 우회로, 고장상황 및 수리완료시간 안내 등과 같이 장애인에게 엘리베이터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보가 적절히 제공되지 않는다면 지하철 이용자가 길을 헤매느라 시간이 허비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잘못된 목적지로 갈 수도 있다. 실제 현장 모니터링 결과, 해당 엘리베이터가 어느 곳으로 가는지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스럽다는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장애인에게 특화된 대응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행 사용하고 있는 지하철역사의 대응매뉴얼을 보면 대부분 엘리베이터 내 간힘 사고, 멈춤 사고 등에 대한 대응책과 그 대응과정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 내용이 매우 간략하며 다양한 상황에 대한 특화된 내용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지적할 만하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특화된 대응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에서는 『(지하철 역사 내)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응대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한 바 있다.<sup>4)</sup> 그 내용은 비록 간략하게 제시가 되어 있으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인권침해 예방 및 응대방법들이 안내되어 있다. 이와 같이 지하철에서 주로 민원이 발생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고객 응대매뉴얼을 만든다면 더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응대 매뉴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하철 역무원들이 이를 항시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매뉴얼을 역무실에 비치해둔다면 즉각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서는 상하이동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상시 이용이 가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되어야 한다. 이번 모니터링에서는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엘리베이터가 현행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되어 있는지, 교통약자의 엘리베이터 접근성은 어떠한지, 상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74개의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의 문제점을 살펴보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한 결과, 기준 미준수 및 감시관리의 부족, 정보제공의 불이행 등 몇 가지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번 모니터링에서는 서울지역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에 한정하여 살펴보았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에서는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4)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에서는 『(지하철 역사내)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응대매뉴얼』에서 지적장애인, 휠체어 이용 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 각 장애유형별에 따라 응대사항을 제시하였다.

---

으나, 도출된 문제점들은 비단 서울지역 지하철 역사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차후 다른 지역의 지하철 역사 승강기 모니터링도 필요하다. 또한 관리감독에 대한 제안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도 향후 과제로 남겨져 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저해하는 엘리베이터의 시설 및 설비 등을 단기간에 개선하기에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다. 이러한 문제들의 이면에는 예산, 인력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 그러나 법령상 보장하고 있는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예산, 인력, 시간 등을 이유로 방관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하루속히 최소한의 기준을 지켜나가야 하며 기타의 문제들을 해결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이동권,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인식이 개선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의 행정부처,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등의 지하철 운영기업 등의 강력한 의지와 실질적인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이고, 장애인단체에서는 끊임없이 지속적인 점검과 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

## 접근 가능한 여행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

글 윤삼호 협동조합 장애인지식정보공동체

‘접근 가능한 여행(accessible tourism)’ 또는 ‘모두를 위한 여행(Tourism for All)’은 “이동성, 시각, 청각, 인지 측면의 결핍으로 여행상품, 서비스, 환경에 접근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독립적이고 평등하게 관광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된 여행상품,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행위”이다. 또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접근성에 대한 특별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장애물이나 문제에 직면하지 않고 휴가나 여가 시간을 즐기도록 하는 일련의 서비스와 시설(물리적 환경, 교통수단, 정보, 의사소통 등)의 총체”이다.

장애인을 비롯한 이동 약자들의 여행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사회는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UN을 비롯한 세계관광기구(UNWTO)를 중심으로 장애인을 비롯한 ‘모두를 위한 여행’ 활성화와 장애물 제거에 노력하고 있다.

### 1. UN의 노력

#### ① 장애인 권리 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s of Disabled Persons)

1975년 12월 UN 총회는 ‘장애인 권리 선언’을 채택한다. 이 선언은 UN이 모든 장애인의 포괄적 권리를 인정한 최초의 UN 규범이다. 1970년대 초부터 미국과 유럽의 장애인들이 자립생활과 탈시설을 주장하면서 장애 문제를 국제적 쟁점으로 만든 것이 이 선언이 나온 배경이다.

장애인 권리 선언은 장애인도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한다.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국적, 재산, 출생에 기초하여 장애인을 구별하지 않고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가맹국에 권고한다.

## ② 세계 장애인의 해(International Year of Disabled Persons)

UN은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포한다. 1970년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장애인운동이 정점에 달하자 장애 문제를 전 세계적 수준의 쟁점으로 만들기 위한 UN의 노력이다. 이 해를 기점으로 UN과 가맹국들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 장애인을 위한 사회 개발,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구체적으로 추진할 이행 계획을 수립한다. 이 이벤트는 국제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초석이 되었다.

## ③ 장애인에 관한 세계 행동 계획(World Programme of Action concerning Disabled Persons)

1982년 12월 3일 UN 총회는 '장애인에 관한 세계 행동 계획'을 채택한다. 이 계획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다시 한 번 선언한다. 이 계획은 장애 예방, 재활, 기회의 평등을 증진하려는 국제 전략으로, 여기에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장애인 참여를 위한 개별 국가의 개발 계획이 포함된다.

또 이 계획은 인권의 관점으로 장애 문제에 접근할 것을 강조하면서, 첫째, 장애와 관련된 정의, 원칙, 개념에 대한 분석, 둘째, 장애인을 둘러싼 국제적 상황, 셋째, 국가별, 지역별, 국제적 수준의 이행 권고를 담고 있다. 이 계획의 성과 중 하나를 꼽자면 국제 사회가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적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1990년 미국 장애인법(ADA), 1995년 영국 장애차별법(DDA)을 비롯한 각 국가의 장애인 차별 금지법들은 이 계획을 규범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2006년 UN 장애인 권리 협약 서문은 이 협약이 세계 행동 계획에 기초한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한다.

장애인의 여행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조항은 세계 행동 계획 제134조다. 이 조항은 "UN 가맹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여가, 문화활동, 여행의 기회를 보장한다. 여기에는 식당, 극장, 영화관, 도서관, 리조트, 경기장, 호텔, 해변 같은 레크리에이션(여가) 공간을 장애인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된다. 가맹국은 이 세계 행동 계획에 따라 장애인이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 또 레크리에이션 활동 또는 여행과 관련된 당국, 여행사, 호텔, 민간단체 등은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 ④ 1983~1992년 장애인 10년(Decade of Disabled Persons) 선언

1983년 UN은 '장애인에 관한 세계 행동 계획'을 실효성 있게 이행하기 위해 새로운 제안을 내놓는다. 1983년부터 1992년까지 시기를 장애인 10년으로 선언한 것이다. 이 기간에 UN은 '장애(disability)'를 장애인과 이들을 둘러싼 환경 사이의 관계로 정의한다. 말하자면 장애 문제의 핵심은 장애를 가진 개인이라기보다 주변 환경이라고 1970년대 중반부터 끊임없이 주장한 국제 장애인운동의 견해를 국제 사회가 인정한 셈이다.

#### ⑤ 장애인의 기회 균등에 관한 표준 규칙(Standard Rules on the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1993년 UN은 '장애인의 기회 균등에 관한 표준 규칙'을 승인한다. 이 규칙에는 '장애인에 관한 세계 행동 계획'과 인권 관점에 기초한 행동 지침 22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UN 가맹국의 장애 정책 지침이 될 이 표준 규칙은 ▶ 동등한 참여의 전제 조건 ▶ 동등한 참여 대상 분야 ▶ 이행 조치 ▶ 모니터링 메커니즘 등 4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동등한 참여 대상 분야'에 레크리에이션과 스포츠가 포함되어 있다. 이 규칙에 따르면 UN 가맹국은 장애인이 레크리에이션 장소에 접근할 수 있고, 장애인의 특별한 욕구를 고려하여 레크리에이션 활동 또는 여행 기회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⑥ 세계 장애인 권리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06년 UN 총회는 '세계 장애인 권리 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한다. 1970년대 초부터 국제 장애인운동이 염원하던 장애인의 포괄적인 권리 보장과 세계 시민권이 마침내 공식적으로 실현되는 순간이다.

장애인 권리 협약은 국제 사회가 인권 관점으로 장애인들의 상황을 이해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인권 목록의 확장이자 지구촌 사회의 진화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그리고 법 아래에서 동등하며, 모든 사람은 동등한 법적 보호와 이익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자격이 있다고 기술한 협약 조문에서 이런 사실이 분명해진다. 이제 장애인 권리 협약 당사국은 장애인을 향한 모든 불평등한 사태에 적극 개입할 의무가 생긴다.

또 당사국은 협약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유형의 차별도 받지 않고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하게 향유하도록 보장하고 증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를 위해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토대에서 물리적 환경, 교통수단, 정보 및 의사소통과 관련된 과학기술과 시스템을 비롯한 정보 및 의사소통, 그리고 공개된 또는 공중에게 제공되는 시설 및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 “다른 나라로 떠날 자유(제18조)”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세계 어느 나라든 장애인이 이동할 자유를 보장하는데, 이것이 여행의 핵심 요소 중 하나다.

특히, 협약 제30조(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레저, 스포츠 참여)는 장애인의 문화활동 참여에 대해 이렇게 규정한다.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장애인에게 다음 사항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 (a) 접근 가능한 형태로 된 문화자원 접근을 향유한다.
- (b) 접근 가능한 형태로 된 TV 프로그램, 영화, 연극 등 문화활동 접근을 향유한다.
- (c) 공연장, 박물관, 영화관, 도서관, 여행 서비스 등 문화활동 및 서비스 공간 접근권을 향유하고 국내 문화유산 및 유적 접근권도 최대한 향유한다.

...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레크리에이션, 레저,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a) 장애인이 모든 수준의 주류 스포츠 활동에 가능하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 (b) 장애인이 장애인 전문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조직, 개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위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적절한 교육, 훈련, 자원을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 (c) 장애인이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여행 등을 즐길 수 있는 장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e) 장애인이 레크리에이션, 여행, 레저, 스포츠 단체나 업체의 종사자들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상의 경과를 통해 볼때, UN이 제시하는 장애인의 여행할 권리는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보장하는 것에서 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82년 UN이 채택한 ‘장애인에 관한 세계

행동계획'은 처음으로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할 기회를 보장”한다. 그 뒤 1993년 ‘장애인의 기회 균등에 관한 표준 규칙’에서 ‘레크리에이션과 스포츠’를 보장하고, 마침내 2006년 장애인 권리 협약 제30조(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레저, 스포츠 참여)는 장애인이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여행 등을 즐길 수 있는 장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2. UNWTO의 노력

### ① 마닐라 선언(Manila Declaration)

1980년 UN 세계여행기구(UNWTO)는 ‘마닐라 선언’을 승인한다. 여기에 당시로는 획기적인 내용이 포함된다. 즉, 여행할 권리를 보장하려면, “이 사회가 가장 실천적이고 효과적이며 차별을 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접근권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마닐라 선언에 따라, UNWTO는 해외 여행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나라를 여행하고 그곳에 체류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개별 국가들과 협정을 맺었다.

### ② 1990년대 장애인 여행 기회 창출(Creating Tourism Opportunities for Handicapped People in the Nineties)

1991년 UNWTO는 결의문 A/RES/284(IX)를 발표한다. 이 결의문에는 1980년대 UNWTO가 추진한 장애인의 제약 없는 여행을 위한 노력을 계승하는 ‘1990년대 장애인 여행 기회 창출’이라는 문건이 들어 있다. 이 문건은 장애인 여행자들에게 실천적이고 효



과적이며 차별 없는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각 국가들이 여행 서비스와 새로운 관광 시설을 만들고 가능하면 기존 시설물을 개조하기 위한 자국 규정 개정에 적용할 지침을 제시한다.

### ③ 국제 여행 윤리 규범(Global Code of Ethics for Tourism)

1999년 UNWTO 총회는 ‘국제 여행 윤리 규범’을 승인한다. 이 규범은 지속 가능한 국제 여행 개발 분야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고하고 준수할 원칙이자 기본 뼈대다. 또 이 규범은 여행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정의한다. 그리고 당시까지 수십 년에 걸쳐 UNWTO가 채택한 여러 문건들, 이를테면 마닐라 선언, 여행자 권리장전(Tourism Bill of Rights), 여행자 규범(Tourist Code)을 집대성한 것이다.

국제 여행 윤리 규범은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권리를 여러차례 언급한다. 특히, 규범 제2조(개별적, 집단적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여행)와 제7조(여행의 권리)는 장애인의 여행할 권리와 모든 여행 관계자들이 장애인의 여행과 이동을 장려하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한다.

제2조의 3 : 여행 활동에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 여행 활동을 통해 인권, 특히 가장 취약한 집단, 가령 아동, 노인, 장애인, 인종적 소수자, 원주민의 인권이 신장되어야 한다.

제7조의 1 : 지구 자원을 발견하고 향유하기 위한 직접적, 개인적 접근은 모든 지구인들에게 동등하게 열려 있는 권리다. 자국 및 국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한다는 것은 자유시간이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의미이며, 여기에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위 조항은 모든 여행자들이 평등하고, 모든 장애인의 권리를 장려하고, 여행을 가로막는 모든 장벽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 ④ 모두가 접근 가능한 여행(Accessible Tourism for All)

2005년 UNWTO는 결의문 A/RES/492(XVI)를 채택한다. 이 결의문에는 ‘1990년대 장애인 여행 기회 창출’을 시대 변화에 맞게 수정한 ‘모두가 접근 가능한 여행’이라는 문건이 포함되어 있다. 이 문건은 ‘장애인’을 다음과 같이 잠정적으로 정의하면서 시작한다. “자

신이 직면하는 환경 때문에 관계를 맺을 능력이 제한되어 고통당하고 여행을 할 때 특별한 편의시설 욕구를 비롯한 여행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신체적·감각적·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노인과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의료적 건강이상을 가진 개인들”, 다시 말해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란 단순히 의료적 의미의 장애인뿐 아니라 연령 등으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사람까지 폭넓게 포괄하는 개념이다.

#### ⑤ 여행 장려 선언 (Declaration on the facilitation of tourist travel)

2009년 UNWTO 총회는 ‘여행 장려 선언’을 승인한다. 이 선언은 여행이 관광 활성화뿐 아니라 국제 친선, 평화, 번영, 인간 해방을 보편적으로 존중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또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관광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지만 앞으로도 더욱 발전할 여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 ⑥ 결의문 A/RES/606(XIX)

2011년 UNWTO 총회는 ‘결의문 A/RES/606(XIX)’을 채택한다. 이 결의문의 핵심은 모두를 위한, 특히 장애인을 위한 여행 접근성을 강화하는 조치이다. 결의문에 따르면, 이렇게 하는 것은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특출한 기회일 뿐만 아니라 여행 산업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한다. 이것은 2009년 총회 권고 사항 및 장애인 권리 협약과 일맥상통한다. 그리고 이 결의문은 장애인 지원 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고 지적한다. 이런 단체들과 맺은 협약을 통해 UNWTO가 장애인 지원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된 것이다.

#### ⑦ 모두가 접근 가능한 여행 매뉴얼(Manual on Accessible Tourism for All - Public) 발간

2015년 UNWTO는 그 동안 논의한 결과를 집대성하여 <모두가 접근 가능한 여행 매뉴얼>을 발간한다. 이 매뉴얼은 모두가 접근 가능한 여행 정책을 가장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나라로 스페인을 꼽는다.

이상에서 보듯이 UNWTO는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접근 가능한 여행, 즉 여행의 보편성, 평등성, 접근성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다.

### 3. 유럽연합의 가맹국 및 기관의 노력

#### ① 사회 행동 계획(Social Action Programme)

1974년 유럽이사회는 취약계층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 행동 계획'을 채택한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을 비롯한 약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담고 있다.

#### ② 장애인 사회 통합(Social Integration of Handicapped People)에 관한 결의문

1981년 12월 유럽이사회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행동을 장려하기 위해 '장애인 사회 통합에 관한 결의문'을 승인한다.

#### ③ 유럽 사회 정책 백서(White Paper on European Social Policy)

1994년 7월 유럽위원회는 유럽연합을 결성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유럽 사회 정책 백서'를 채택한다.

#### ④ 『장애인 여행자에게 접근 가능한 유럽 만들기(Making Europe Accessible for Tourists with Disabilities)』제작

1996년 유럽위원회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모든 사람의 기회 평등에 관한 원칙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한다. 그리고 '장애인 여행자에게 접근 가능한 유럽 만들기'라는 제목의 여행 안내서를 제작한다. 이 안내서는 장애인 여행자들에게 적절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 ⑤ 암스테르담 조약(Treaty of Amsterdam)

유럽연합은 1999년 5월 '암스테르담 조약'을 시행하고, 모든 유럽인의 인권과 개인의 자유를 재천명한다. 또 장애인 차별에 맞



서 싸우기 위한 더욱 효과적인 행동에 들어간다. 이 조약 제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유럽이사회는 ... 성별, 인종이나 문화, 종교나 신념, 장애, 연령, 성적 지향에 기초한 차별과 맞서 싸우기 위한 적절한 행동을 취한다.”

#### ⑥ 『장애인에게 장벽 없는 유럽을 위하여(Towards a Barrier Free Europ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제작

2000년 5월 유럽위원회는 ‘장애인에게 장벽 없는 유럽을 위하여’를 제작하고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이념을 확산시키고 장애인의 접근성 개선을 약속한다.

#### ⑦ 유럽이사회 지침(Council Directive) 2000/78/EC

2000년 12월 유럽위원회는 ‘유럽위원회 지침 2000/78/EC’을 발표한다. 이 지침을 통해 유럽연합은 최초로 장애인 차별 금지 원칙에 기초하여 장애인 고용 평등 기본 정책을 수립한다.

#### ⑧ 모두를 위해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여행(Socially sustainable tourism for everyone)에 관한 견해

2003년 10월 유럽경제사회위원회는 ‘모두를 위해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여행(Socially sustainable tourism for everyone)에 관한 견해’를 발표한다. 이 견해에는 지속 가능하고 접근 가능한 여행 기준에 따라 장애인이 여행에 완전히 참여할 권리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100가지 제안이 들어 있다.

#### ⑨ 행동 계획(Action Plan) 2006-2015



2006년 4월 유럽이사회는 장애인의 권리와 완전한 사회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행동 계획 2006-2015’를 채택한다.

### ⑩ 유럽 만민 기회 동등의 해(European Year of Equal Opportunities for All)

유럽연합은 인권에 기초한 평등과 차별 금지를 장려하기 위해 2007년을 ‘유럽 만민 기회 동등의 해’로 정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한다.

### ⑪ 유니버설 디자인을 통한 완전 참여 달성 결의문

2007년 유럽회의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통한 완전 참여 달성 결의문’을 채택한다. 이 결의문은 유럽연합 가맹국으로 하여금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완전히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려고 권고한다. 특히, 디자인으로 인한 새로운 장벽의 탄생을 방지하기 위해 시작 단계부터 모든 사람이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정책, 법률, 시책에 적극 도입할 것을 강조한다.

### ⑫ EU 기본 권리 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2010년 3월 유럽연합은 ‘EU 기본 권리 헌장’을 제정한다. 이 헌장은 사회 변동, 사회 진보,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헌장 제21조는 성별, 인종, 피부색, 문화나 사회적 기원, 타고난 모습, 언어, 종교나 신념, 정치 등 견해, 소수성, 재산, 출생, 장애, 연령, 성적 지향에 기초한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 또 26조는 장애인의 독립, 사회 및 직업 통합, 지역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조치의 혜택을 볼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 ⑬ 유럽 장애 전략(European Disability Strategy) 2010-2020

유럽위원회는 장애인의 사회 및 경제 참여를 강화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권리 행사를 장려하며, 장애인의 사회 통합과 웰빙을 개선하기 위한 ‘유럽 장애 전략 2010-2020’을 제시한다.

## 격려(激勵): 용기나 의욕이 솟아나도록 북돋워 줌

글 이동한 지방의회 의정모니터단원

### 나는 격려가 된다.

어제 일기예보에는 분명 비가 오지 않는다고 했다. 우산도 없이 집을 나섰다. 낭패를 보았다. 많은 양의 비는 아니었으나 택시 앞 유리창 정도는 말끔하게 씻어낼 수 있을 양의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오늘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인권강의가 있는 날이다. 한 시간 정도 여유 있게 출발하여 근처 카페에서 강의내용을 점검할 생각이었다. 이대로 계속 비가 내린다면 카페에 가지 못할 것 같았다. 한 시간 후 카페에서 나와 학교로 가야하는데 우산도 비옷도 없는 내겐 비는 커다란 장애물이었다. 학교로 곧바로 가자니, 강의시간까지 하릴 없이 기다려야 될 것 같아 불편했다. 낯선 공간을 견뎌낼 자신이 없었다. 결국 카페로 갔다. 제발 비가 그치길 바라며 창밖을 수십 번 내다보았다. 바람은 이렇지 않았다. 좀 전보다 빗방울이 약해졌으나 그친 건 아니었다. 나는 비를 맞은 채 강의를 했다. 나도 내 꼴이 우스웠는데, 아이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쳤을까? 민망함을 숨기고 준비한 말을 거침 없이 쏟아냈다. 마치 오늘 내 몸에 내린 비처럼 말이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는 게 인생이다. 오히려 지극히 당연하다. 정작 예상 가능한 내일은 애초에 없을 수도 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나는 더욱더 그러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비단 외부로부터 벌어져 내 코앞으로 닥치는 일뿐만 아니라 자신의 한계로부터 벌어져 스스로를 울아매는 일이 더 잦다. 즉 순간순간 신체적 무력감을 느낀다. 고통에 내일은 없다. 늘 현재진행형이고 끝은 그냥 끝일뿐이다. 내 강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이렇하다. 사람은 본디 사람이며 이 세상 사람 중에 사람 아닌 사람은 없다는 것. 그래서 타인과 자신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 말한다. 같기 때문에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같아지려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이다.

강의를 마무리할 때쯤 항상 질문을 받는다. 예상대로 거의 질문이 없다. 간혹 가다 하는 질문은 대체로 이렇다. "어쩌다 그런 거예요?" 란 질문이다. 나는 간략한 답변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결코 말이 길어져서는 안된다. 희귀 질병(뇌수막폐혈증)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하고 나면 낮은 탄식이 들리곤 한다. 그 소리에서 연민과 호기심이 발견된다. 허나 강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고, 그 짧은 시간 안에 호기심을 충족시켜 줄 어휘가 떠오르지 않아 얼버무리고 나올 때가 종종 있다. 어쩌면 아이들은 인권측면보다는 내가 걸렸던 질병과 내 장애 특징만 기억할지 모른다. 어수선한 주제 같아도 오히려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장애 발생은 크게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 두 가지 측면으로 나뉜다. 선천적인 것은 유전적 특성으로 태어날 때부터 조금 다르게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 후천적인 것은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생긴 장애를 말한다. 다른 비장애인이 볼 때는 비슷한 삶의 연속으로 비쳐질지 모른다. 나 역시 후천적으로 장애가 생겼고 그 전까지 장애인에 대한 시선은 그리 밝지 않았다. 아이들의 시선 또한 그때의 나와 별반 다르지 않음을 느낀다. 명암이 0이 기준이라면 마이너스쯤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결국 나는 아이들의 체험대상이고 비약을 조금 섞자면 실험대상이 된다. 그들에게서 비쳐지는 나, 나로 비쳐지는 자기 자신들. 그리고 인권! 아이들이 무슨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해야하는지, 나는 격려의 방식이 된다.

## 지방의회 의정모니터링의 격려란?

지방의회 의정모니터링은 의회의 조례안 개정과 수정 또는 보안한 내용을 모니터링 하여 모니터링의 의의를 다시 새긴다. 또한 조례안 가결 여부를 결정하여 시행하는 모든 전반적 과정을 한눈에 보게끔 하여 의회와 모니터링단원이 소통하는 것이다. 가끔 소통의 방식에서 오류가 나기도 한다. 안건을 개정하고 수정한 내용이 자료실에 올라와 있지 않을 경우 매우 난감하다. 그렇다고 아예 없는 것이 아니다. 찾아야 한다. 개정이나 수정된 회

의가 환경복지위원회라고 치자. 그럼 몇 회, 몇 차의 환경복지위원회에서 개정 혹은 수정되었는지 회의록을 찾고 내용이 어떤지 봐야 한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조례 개정과 수정은 따로 한글 파일로 만들어져 있어 내용 파악과 가결 여부 또한 확인해야 한다. 이 조례 개정 자료를 올려놓은 위치가 광역의회, 지방의회마다 다르다.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 번 수고를 해야 할 경우도 있다.



모니터단원은 당연히 찾아서 모니터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조금은 수월하게 찾을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모니터단원의 권리 중 하나이다. 이런 대화가 소통이다. 내일 당장 바뀔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이러한 여유는 당장 낸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대화한다면 분명 점점 좋아질 거라 믿는다.

모니터단원에 앞서 나는 국민(시민 혹은 도민)의 한 사람이기에 정치참여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즉 단원으로서 모니터링 차원의 열람이 아닌 국민이 참여의식을 갖고 지역사회에 관심과 애정을 쏟을 기회로 열람 접근성을 확보 위해 의견을 피력 한다. 사회 구성원으로 국가공공체의 일원으로 존재 이상의 존재를 발휘한다.

더 이상 어느 한 부류를 특정지어서 소수자라고 부르는 흐름은 지나가고 있다. 인권강의를 나갔을 때는 장애인이라는 소수자가 아니라 아이들 앞에 홀로 선 공간적 소수자, SBS 코미디 프로그램 [웃찾사] 남자끼리 코너에서 데이트 폭력에 시달리는 남자도 소수자라고 칭하는 것처럼 소수자의 의미가 확대되고 있다. 절대적인 개념과 상대적인 개념이 서로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를 탄생시키고 있다. 누구나 소수자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 소수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모니터단원으로서의 나는 분명 소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생존하도록 요구할 때는 절대적 다수인 것이다. 그리하여 스스로로 하여금 모니터링이 격려가 된다.

## 우생학에 날리는 사이다 일침 미래 사회와 장애

글 류미레 푸른영상 다큐멘터리 감독



정말 오랜만에 극장에 갔습니다. <곡성>이  
촛촛히 상영되고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영  
화가 많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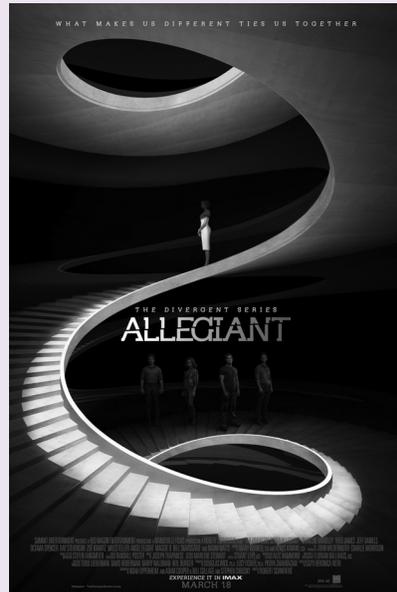
<다이버전트 : 얼리전트>라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제목의 영화가 곧 시작한다기에 아  
무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봤습니다.

나중에 찾아본 바에 따르면 <다이버전트>  
는 베로니카 로스의 3부작 소설이 원작이라  
고 합니다. 가까운 미래도시 시카고가 배경  
이고 잦은 전쟁과 자연재해로 폐허가 된 도  
시에서 인류는 다섯 분파로 나뉘어서 자신  
이 속한 분파의 행동 양식을 절대적으로 따  
르며 통제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  
에러다이트, '용기' 돈트리스, '평화' 애머  
티, '정직' 캔더, '이타심' 애브니게이션. 다  
이버전트는 다섯 분파에 모두 속하는 동시  
에 또한 속하지 않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다이버전트〉, 〈인서전트〉, 〈얼리전트〉로 이루어진 3부작 중 마지막 영화를 봤으니 얼마나 열렬했겠어요? 잘못 들어왔나 싶었지만 나가봤자 돈만 날리고 다른 영화를 보러 해도 그 무섭다는 〈곡성〉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 어쩔 수 없이 그냥 앉아서 보았습니다.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다이버전트 주인공들이 살고 있는 시카고는 장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여자 주인공 트리스와 남자 주인공 포를 포함한 다이버전트 군단들이 장벽을 넘어 새로운 세계에 당도해서 겪는 사건들이 중심 내용입니다.

## SF영화들의 암울한 미래

벌써 오래전 일인데요.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던 가수 강원래 씨는 일어나 걷고 싶다는 자신의 절실한 희망을 뮤직비디오를 통해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 후 장애인 인터넷 신문 「함께걸음」의 기사를 보며 강원래 씨의 꿈이 가까운 미래에 실현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 피츠버그 재활공학센터 책임연구원이었던 김중배씨의 첨단 재활공학 기술 'LOCOMAT' 소개 동영상의 제목은 '전신마비의 몸으로 21년 만에 걸어보다'였습니다. 강원래 씨의 뮤직비디오와 그 동영상을 보고 나면 자연스럽게 과학기술의 발달이 신체 장애에 따르는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미래사회를 그린 영화는 꾸준히 만들어져 왔습니다. 과학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로 꼽히는 〈블레이드 러너〉에는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레플리컨트(복제인간)가 등장합니다. 레플리컨트의 존재론적인 질문은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해 줍니다. 이러한 질문은 〈아일랜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던져집니다. 이밖에도 미래사회를 그린 영화들은 많습니다. 자신을 인간으로 생각하는 사랑스러운 로봇의 이야기 〈에이.아이(A.I.)〉, 이제껏 보아왔던 모든 세상이 사실은 가짜였다는 것으로 큰 충격을 던지는 〈트루먼 쇼〉와 〈다크 시티〉, 정보화의 수준만큼이나 꼭 짜인 감시 체제로 주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마이너리티 리포트〉, 탯줄을 연상시키는 라인을 척추에 꽂음으로써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되는 〈엑시스턴스〉까지 영화 속 미래사회는 다양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우생학적 시선에 시원한 일침을 날리는 영화  
〈다이버전트 : 얼리전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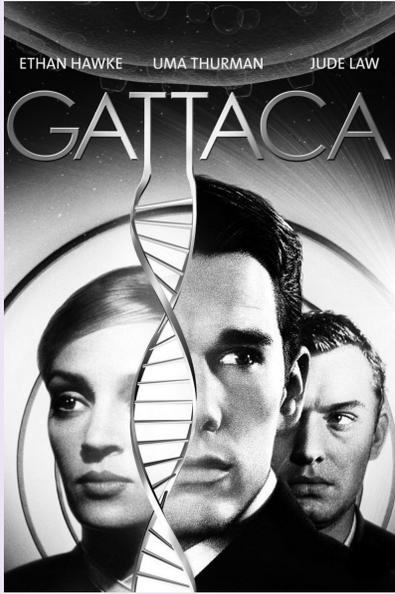
목숨을 걸고 찾아간 그곳이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영화들이 그리는 미래는 대부분 암울합니다. 고도의 테크놀로지가 인간 생활을 풍요롭게 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영화 속 인간들이 맞닥뜨리는 가장 큰 적은 테크놀로지 자체입니다. 장애 문제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성큼 발전한 세상에서도 영화 속 장애인들은 무기력하게 방치되어 있거나 오히려 더 냉정하고 싸늘한 시선 속에서 소외된 채 존재합니다. <가타카>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97년 작 <가타카>는 인간의 성공과 실패가 유전인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까운 미래사회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회의 여성들은 더 이상 출산의 고통을 감내하지 않습니다. 선택된 유전자를 이용해 안전하고 확실한 방식인 ‘인간의 아이’를 생산해 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자연스러운 사랑의 결과로 태어난 ‘신의 아이’는 출세의 기회 자체를 봉쇄당한 채 사회의 하층민으로 살아갑니다. 장애를 가졌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유전자를 가졌지만 사고 때문에 하반신이 마비된 제롬 유진 머로우의 운명은 더 더욱 가혹합니다. 완벽한 유전자를 가진 뛰어난 수영선수였지만 자동차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제롬은 절망 속에서 살아가다 주인공 빈센트에게 자신의 신분을 빌려주고 스스로 한 줌 재가 되고 맙니다. 주인공인 비장애인 빈센트의 입장에서 보면 고마울 따름이었지만 여기에는 장애에 대한 섬뜩한 시선이 숨겨져 있습니다.

기억을 돌이켜 보면 나치 독일에 의해 자행된 대학살의 희생자는 유대인만이 아니었습니다. 공산주의자와 성소수자, 장애인 또한 대량 학살의 희생자였습니다. 장애인을 바라보



영화 <가타카>가 그리는 세상은 데이비드가 만들려는 세상과 닮아있습니다.

는 시선에 관한 한 이 영화는 히틀리의 태도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완벽한 우성 인자들만 추출되는 이 사회의 시스템에 따르면 장애인은 선천적으로 태어날 가능성 자체가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장애가 없는 세상이라 좋지 않냐고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사회의 장애인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숨어 있습니다. 선천적 장애를 발본색원하는 데 유능한 이 사회가 중도장애에 대해서는 참으로 무능할 뿐입니다. 우주에 식민지를 건설할 만큼 과학기술은 발달했지만 자동차 사고로 인한 장애에 대해서 사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롬은 사회로부터 도태되어 쓸쓸하게 살아가다가 스스로 벽난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 <다이버전트 : 얼리전트>의 섬뜩한 인간관

아무런 정보 없이 시리즈물을 보는 일은 의외로 재미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여자 주인공 트리스가 지도자 격이더라구요. 장벽을 넘어가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줄 알았는데 목숨을 걸고 당도한 그 세상은 시카고보다 더 참혹했습니다. 흙도 물도 시뻘겋고 하늘에서는 핏빛 비가 내립니다. 일행 중 한 명이 방사능에 오염된 것 같다는 말을 스치듯 합니다. 탈핵을 이루지 못하면 망가진 세상이 그 모양일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늘 그렇듯 일행 중 한 명은 트리스를 원망하지요. 어쨌든 그런 우여곡절을 거치며 진짜 새 세상에 당도합니다. 새로운 세상의 이름은 유전복지국입니다. 유전복지국의 사람들은 트리스와 포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벌어진 일들을 생중계로 보아 왔기 때문입니다. 트리스 일행은 소독을 하고 팔에 바코드를 받습니다. 그런데 유전복지국의 지도자로 보이는 데이비드를 만나러 가는 길에 포는 함께 하지 못합니다. 바코드에는 각자의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데 트리스는 순혈인이고 포는 결합인이기 때문입니다.

주인공들이 시카고보다는 더 나은 세상일 거라고 믿고 사선을 넘었으니 관객인 저도 주인공들의 마음에 이입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는 유전복지국의



면모는 자꾸 고개를 갸웃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시카고에서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는 인류를 축구 생중계 보듯 구경해 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순혈인과 결합인으로 양분한 채 분리 정책을 펴서 살아가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새 세상이 어찌면 좋은 곳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동지로, 연인으로, 늘 함께였던 트리스와 포는 유전복지국에서는 전혀 다른 자리에 서게 됩니다. 트리스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높이 높이 올라가야 닿을 수 있는 투명하고 깨끗한 방에서 주로 데이비드와 함께 지냅니다. 포는 감옥이나 군대를 연상케 하는 철문으로 만들어진 방에서 생활하며 경계 지대를 순찰하는 일을 합니다.

위험한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사격 훈련까지 한 후 찾아간 경계 지대에서 포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 마을의 집들은 흙먼지가 두껍게 배어 있는 천으로 지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초라한 행색의 어른들이 더 초라한 행색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포가 소속된 군대는 그 아이들을 데려옵니다. 포의 상관은 '구출'이라고 표현하지만 포는 "이건 납치다"라고 반박합니다. 아이를 뺏기지 않으려는 부모들은 총탄에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렇게 데려온 아이들에게 정체 모를 가스를 흡입시키자 아이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잊습니다. 컴퓨터를 포맷시키듯 아이들의 뇌를 초기화시키는 거지요.

그 행위를 '구출'이라고 표현하며 포의 상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 남으면 수명이 20년, 우리와 함께 있게 되면 그 두 배를 넘게 산다." 포는 이 상황을 알리기 위해 납치한 순혈인의 바코드를 이용해 데이비드와 트리스가 있는 윗세상으로 갑니다. 하지만 포의 항변에 대해 데이비드는 당당합니다. "어차피 부모들은 끝난 거니 아이들만이라도 살리는 거다."



데이비드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말은 우생학자라는 단어입니다.

모두 똑같은 인류였겠지요. 데이비드가 속한 계층은 대재난 이전에도 상위 1%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잦은 전쟁과 자연재해에도 결함없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유전복지국보다 더 위에 있는 세상에 살면서 의회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모든 일들을 결정합니다. 시카고와 유전복지국의 경계 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속칭 흠수저자들입니다. 시카고의 흠수저들이 다섯 분과로 나뉘어져 서로 대립하고 경쟁하고 협상하는 모든 광경들을 상위 1%들은 축구 경기처럼 관람합니다. 경계지대의 흠수저들에게서는 아이들을 빼앗아 와서 유전복지국의 일꾼으로 씁니다. 트리스가 특별한 것은 시카고에서 태어났는데도 순혈인이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는 트리스의 유전자를 연구해서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비드가 말하는 구원은 도대체 뭘까요? 아마도 흠수저의 다음 세대들은 트리스처럼 순혈인으로 태어나게 만들려는 계획이겠지요. 경계 지대의 어른들을 버리고 온 것처럼 시카고의 흠수저들도 버린 것입니다. 데이비드의 계획이 성공하면 <가타카> 같은 세계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유전복지국의 지도자 데이비드 앞에 뭔가 직함을 붙인다면 우생학자라는 단어가 적합할 것 같습니다. 위키피디아에서는 우생학에 대해 '인류를 유전학적으로 개량할 것을 목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문제가 유전자의 개량으로 해결될까요? 많은 SF영화에서 우생학적 시선은 거리낌없이 보여져 왔습니다. 트리스는 상위 1% 중에서도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당신들은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어떤 문제를 유전자에서 찾고 그것을 어떤 집단의 특성으로 인식하는 우생학적 시선은 틀렸습니다. 얼떨결에 본 <다이버전트 : 얼리전트>를 좋아하기로 했습니다. 트리스는 좀더 생생한 언어로 우생학적 시선에 대해 일침을 날립니다. 그것을 미처 다 읊기지 못하는 제 기억력이 안타깝습니다. 직접 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기가 아닌 바로 여기에서, 결함이 있든 없든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보자는 트리스의 제안은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메시지이니까요.

## 센터는 지금



3월 10일~11일 2016년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전국 활동가 대회(국제청소년유스호스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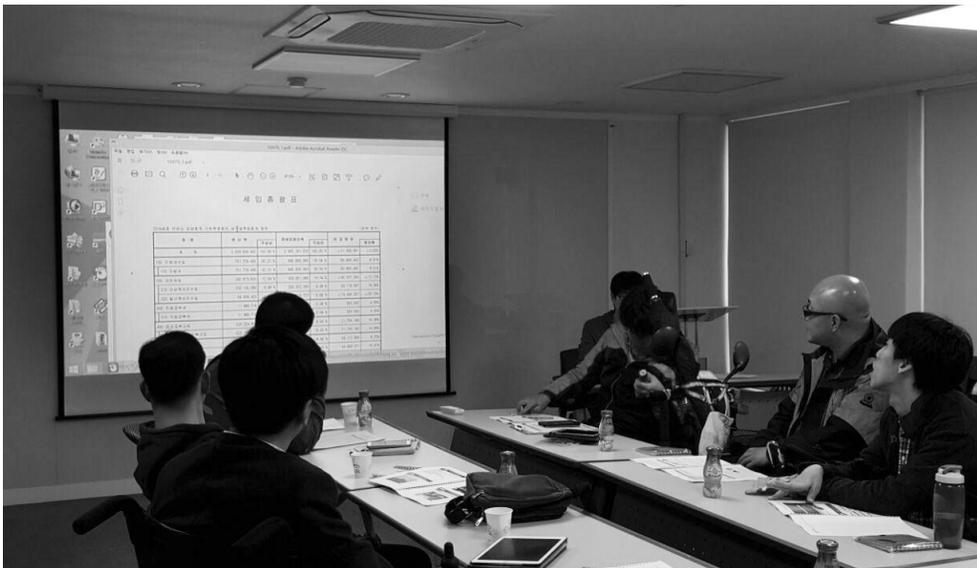


4월 사업별 모니터단 교육 (지방의회 의정모니터단)

## 센터는 지금



4월 모니터단 교육 (건강증진프로그램, 조례법률 모니터단)



4월 모니터단 교육 (정책예산 모니터단)

## 센터는 지금



5월 10일~11일 2016년 전체 모니터단원 교육(하이서울유스호스텔)

## 페이스북에서 만나는 센터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페이스북 페이지 (<http://www.facebook.com/ablemonitor>)가 개설되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국내외 언론기사, 장애인계 소식, 학술자료, 우리 센터 소식 등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여러분들께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센터는 적극적이고 활발한 소통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모두가 편리한 웹·모바일 세상을 꿈꾸는 IT 사회적기업 웹와치

웹와치(주)는 모두가 편리한 웹·모바일 세상을 꿈꾸는 IT분야 최초의 사회적기업으로서, 웹사이트의 장애인 접근성을 심사 평가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지정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입니다.

웹와치(주)는 웹 접근성 진단 방법과 지표, 평가와 자동평가 보고서 등을 꾸준히 개발해왔으며, 웹 접근성 자동진단 도구인 Watch 1.0을 개발하여 프로그램 등록하고, 웹 접근성 상시 모니터링 서비스인 WMS를 특허등록 하였으며, 모바일 접근성 원격 진단 솔루션 MAARES를 개발하여 특허출원 하는 등 접근성 분야 기술선도기업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 웹와치 주요 사업

###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국가 공인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의거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정한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이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보장한 웹사이트에 대해 인증하고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



### MA진단·컨설팅 / 품질인증 Mobile App Accessibility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진단·컨설팅과 품질인증



- \* MA 품질인증 대상 : Google Android OS 기반 애플리케이션  
Apple IOS 기반 애플리케이션

### SA진단·컨설팅 / 품질인증 Software & Solution Accessibility

응용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솔루션의 장애인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진단·컨설팅 및 품질인증



- \* SA 품질인증 대상 : Microsoft Windows OS 기반 소프트웨어  
사용자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 접근성 지원 소프트웨어  
웹 브라우저와 연동되는 RIA 소프트웨어 모듈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



T. [02]2678-0078

E-mail. webwatch@webwatch.or.kr

차이가 차별이  
되지않는 대한민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make the  
right real

"장애인권, 이제 실천입니다"

#### 지역모니터링센터

서울 (대표 이권희)	T. 02-833-905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43 에이블허브 5층
부산 (대표 김호상)	T. 051-582-7116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675 우신빌딩 2층
광주 (대표 김 량)	T. 062-673-0420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중앙로 131번길 17
대전 (대표 안승서)	T. 042-286-0036	대전광역시 동구 옥천로 176번길 15-4 동진프라자 332호
울산 (대표 성현정)	T. 052-289-1254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로 73 세한빌딩 5층
경기 (대표 안미선)	T. 031-906-309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34, 남정시티프라자 806호
충남 (대표 황영란)	T. 041-631-0691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47번길 새아스프라자 4층
전북 (대표 김미아)	T. 063-228-1989	전북 전주시 완산구 만내4길 6-23
경남 (대표 문숙현)	T. 055-283-1313	경남 창원시 의창구 신월로 42 토월복합상가 303호
제주 (대표 고현수)	T. 064-751-8097	제주도 제주시 천수동로 30, 201호